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An Estimation of Retirement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정 원 석**· 강 성 호***

Chung Wonsuk, Kang Sungho

현재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노후소득 대체율은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는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 등으로 퇴직급여가 노후소득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적립금과 수령하는 연금이 동일할 경우 퇴직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금액과 연금적립금 누수를 막고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연금액을 예상하여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제도를 개선하여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 없이 적립금을 유지한다면 기존가입자는 퇴직연금으로부터 7.2%의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IRP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추가로 적립하거나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5% 수준으로 제고할 경우 퇴직연금으로부터 11.5%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기간을 10년 정도 늘릴 경우 퇴직연금으로부터 약 23%의 소득대체율을 올려 국민연금에서 35%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OECD평균인 62%에 가까운 58% 수준의 노후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연금자산 적립과 근로기간 증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노후빈곤 완화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문 색인어: 퇴직연금,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030501, B030602, B030603, B030700

* 본 논문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저자가 속한 기관의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wonsuk@dau.ac.kr), 제1저자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ksh0515@kiri.or.kr), 교신저자

논문 투고일: 2024. 1. 19, 논문 최종 수정일: 2024. 2. 26, 논문 게재 확정일: 2024. 2. 23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따라서 노인빈곤을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5년 모두 고갈되고, 이후 국민연금제도가 부과식으로 바뀌면 근로세대는 연 소득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납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간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¹⁾ 이는 현 상황에서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를 통한 노인빈곤을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적절한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등 다양한 사적연금을 활용하여 부족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중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적립금을 적립하고 수령하는 연금의 총액이 적립된 적립금과 동일한 사적연금의 특징을 가짐과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연금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적·사적 특징으로 인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원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활용이 고려되어야 할 연금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퇴직자 중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 비율은 7.1%에 불과하다.²⁾ 대다수 가입자가 은퇴 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이유는 적립금의 규모가 연금으로 수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의 평균 적립금은 2,549만 원으로 연금수령자 1억 5,550만 원의 16.6%에 불과 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원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

1) 민간자문위원회는 1안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안, 2안으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추(2023년 현재 42.5%)는 두 가지 개혁안을 제안하였다.

2) 연금수령자 비율은 2020년 3.3%, 2021년 4.3% 2022년 7.1%로 상승중이다.

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의 역할에 주목하여 현재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이어서 현재 퇴직연금으로부터 충분한 소득대체율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여 퇴직연금 적립금 누수를 막고, 자산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때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현재 상태에서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평균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가 보완되어 적립금 누수를 막고, 더 많은 적립금을 더 잘 운용할 경우 퇴직연금으로부터 12% 이상의 노후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더해 근로기간을 10년 증가시켜 연금수급기간을 10년 감소시켰을 때 소득대체율은 23% 수준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논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I장에서는 연구배경과 선행연구 및 차별성을 제시하고, II장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III장에서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I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우리나라에서 연금제도의 소득 준비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소득대체율 및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연구로는 정인영(202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제공하는 소득대체율의 계산 방식과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수급시점에 따른 평균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내부 자료를 이용해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연금을 신규 수급하는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은 18.6년이었고, 이들이 얻는 실질소득대체율은 24.2%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가 성숙된 2060년에는 평균가입기간이 27.3년 실질소득대체율은 24.9%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모수 데이터를 국민연금의 산식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추산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 소

득대체율은 수지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납입 기간 및 납입액에 따른 지급액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연구로는 강성호(2023)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해당 연구는 퇴직연금 가입기간 동안 연 소득의 8.3%를 적립하고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용수익률을 올리면 퇴직연금으로부터 8.3%~13.3%의 노후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가입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은퇴 시까지 퇴직연금을 누수 없이 적립한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것으로 현실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 적립현황을 반영하여 현재 수준에서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한편, 퇴직연금 관련 연구로는 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계층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류건식 외, 2017; 강성호 외 2018) 등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추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퇴직연금은 대부분 가입자의 적립금이 연 소득의 8.3%(1/12) 수준이다.³⁾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 등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연금자산을 적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원석·강성호(2015)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납입액 수준별로 실질소득 증가가 연금저축 납입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수준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들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저축 납입액이 세제혜택 한도에 가까운 그룹에서는 소득 증가가 연금저축 납입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연금저축 납입액이 중간 수준인 그룹에서는 소득 증가가 연금저축 납입액 증가로 이어짐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상향조정 된다면 연금저축 납입액이 높은 그룹의 연금저축 납입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저소득층이 가입한 연금에 세제혜택을 제공함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정원석(201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동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자에 대해 초과자(12%) 보다 더 높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효과를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가적인 세액공제율을 제공했음에도 해당 계층의 연금

3) DC형의 경우 연 소득의 1/12를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하며, DB형의 경우 퇴직시점 1개월분의 급여를 근속연수에 곱하여 지급한다.

저축 감소는 추세는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적립을 유인해 노후소득 대체율을 제고하고자 했던 정책 효과를 분석한 연구의 논의를 종합하면 세제혜택 확대는 중산층 이상 저축 여력이 있는 계층에는 효과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 노후소득대체율 증가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원석·강성호(2017)는 저축 여력이 없고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가 많은 저소득층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연금자산 축적을 유도할 수 없다고 보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독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노인빈곤율이 4.8%p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적연금 제도변화가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스웨덴의 연금개혁 이후 새로운 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Palmer(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가입자가 연 소득의 16%를 기여하고 은퇴 이후 기여한 만큼 수령하도록 개혁된 공적연금(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이하 NDC)⁴⁾과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연소득의 2.5%, 퇴직연금에서 연 소득의 2%를 적립하고 이를 금융회사를 통해 운용하도록 한 스웨덴 연금 시스템으로부터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21세부터 65세까지 납입하는 NDC로 운용되는 공적연금의 수익률을 약 2%, 의무가입 사적연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이 2%, 5%, 그리고 8%인 경우를 나누어 은퇴시점 적립금을 기대여명 동안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하고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21세부터 65세까지 근로 후 은퇴 시 NDC제도로 운영되는 노령연금으로부터 약 39%, 그리고 의무사적연금과 퇴직연금(연 소득의 2% 기여)이 가입기간 중 연평균 5%의 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22%의 소득대체율 제공해 공·사적연금으로부터 총 61%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Palmer의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기간 소득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

4) NDC제도는 개인의 계좌에 적립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 명목상의 금액을 기록하고 이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이자율을 부리한 뒤 은퇴 시 납입원금과 가상의 이자를 더한 총액과 은퇴시점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제로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고 운용되는 DC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금과 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가정하여 적립금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추정한다. 그리고, 제도 개선, 퇴직연금 납입액과 수익률 제고 등에 따라 퇴직연금으로부터 달성할 수 있는 노후소득대체율 변화를 추정하였다.

II. 퇴직급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퇴직급여 현황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⁵⁾을 통칭하여 부르는 표현이다. 퇴직금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 목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사내에 유보하여 기업 도산 시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고, 이직 시 지급 등으로 인해 은퇴 시점까지 노후생활자금 적립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노후소득원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사업체 밖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였고, 은퇴 연령 이전 중도인출 조건을 강화하여 연금자산 적립을 강화하였으며, 이직 시에는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에 적립시켜 퇴직연금 적립의 연속성을 높였다.

확정급여(Defined Benefit, 이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점 직전 3개월 평균 월 급여를 근속연수와 곱하여 지급하고 이를 위한 준비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연간 총 소득의 1/12 (8.3%)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적립하고 근로자는 이를 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적립금에 대한 근로자의 소득세는 퇴직연금 수령 시까지 유예한 뒤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 되며, 사용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5) 퇴직연금 중 본인 기여부분은 퇴직급여에서 제외됨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은퇴 이후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하도록 은퇴 연령(55세) 이전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적립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혹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등이다. 그리고 이직 시 혹은 은퇴연령 전 퇴직 시에는 적립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로 이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물론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 분은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55세 이전에 인출이 가능하다.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퇴직연금은 확대되어 2022년 현재 43.6만 여 사업장에 도입되어 사업장 기준 도입률은 26.8% 수준이고, 총가입자 수는 694.8만 명에 이르러 근로자 기준 가입률은 53.3% 수준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2018년 190조 원에서 2019년 221.2조 원 2020년에는 255.5조 원, 2021년 295.6조 원, 그리고 2022년 335조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를 제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적립금 중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이하 DB)은 192조 원(57.3%),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 83조 원(24.9%) 그리고 개인형 IRP 적립금이 58조 원(17.4%)에 이른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990조 원⁶⁾임을 고려할 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 국민연금공단, 2023년 7월 말 기준

〈Table 1〉 Retirement pension adoption and enrollment rate by business size(in 2022)

(Unit: business, persons, %)

	Adopted				Enrolled			
	Total adopted business	Eligible business(A)	Adopted business(B)	Adoption rate (B/A×100)	Total enrolled workers	Eligible workers (A)	Enrolled Workers (B)	Enrollment rate (B/A×100)
Total	436,348	1,594,649	427,757	26.8	6,948,108	12,281,213	6,533,830	53.2
(Ratio)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Under 5	97,147	874,426	92,172	10.5	173,195	1,317,302	156,188	11.9
	(22.3)	(54.8)	(21.5)	-	(2.5)	(10.7)	(2.4)	-
5~9 people	132,709	396,649	130,569	32.9	511,198	1,494,534	449,092	30.0
	(30.4)	(24.9)	(30.5)	-	(7.4)	(12.2)	(6.9)	-
10~29 people	134,676	233,115	133,514	57.3	1,217,950	2,230,181	1,083,976	48.6
	(30.9)	(14.6)	(31.2)	-	(17.5)	(18.2)	(16.6)	-
30~49 people	29,771	40,605	29,648	73.0	563,704	920,304	521,285	56.6
	(6.8)	(2.5)	(6.9)	-	(8.1)	(7.5)	(8.0)	-
50~99 people	23,609	29,111	23,496	80.7	746,248	1,150,153	701,905	61.0
	(5.4)	(1.8)	(5.5)	-	(10.7)	(9.4)	(10.7)	-
100~299 people	13,302	15,175	13,241	87.3	1,063,033	1,470,808	1,013,667	68.9
	(3.0)	(1.0)	(3.1)	-	(15.3)	(12.0)	(15.5)	-
300 or More	5,134	5,568	5,117	91.9	2,672,780	3,697,931	2,607,717	70.5
	(1.2)	(0.3)	(1.2)	-	(38.5)	(30.1)	(39.9)	-

Source: Complied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Dec. 19, 2023), 2022 Retirement Pension Statistics Results

〈Table 2〉 Contribution by plan types

(Unit: 100 million won)

Year	DB		DC		IRP				Total	
	Amount	Ratio (%)	Amount	Ratio (%)	Business		Individual			
					Amount	Ratio (%)	Amount	Ratio (%)		
'05	64	39.3	61	37.4	39	23.9	0	0.0	163	-
'06	5,020	66.3	2,006	26.5	508	6.7	33	0.4	7,568	(7,405)
'07	18,276	66.3	7,033	25.5	1,315	4.8	927	3.4	27,550	(19,982)
'08	45,818	69.3	16,141	24.4	2,688	4.1	1,474	2.2	66,122	(38,572)
'09	100,519	71.7	29,833	21.3	3,762	2.7	6,134	4.4	140,248	(74,126)
'10	209,826	72.0	51,530	17.7	5,395	1.9	24,720	8.5	291,472	(151,224)
'11	375,394	75.2	81,070	16.2	6,093	1.2	36,610	7.3	499,168	(207,696)
'12	496,987	73.8	119,555	17.8	6,641	1.0	50,277	7.5	673,459	(174,291)
'13	606,573	72.0	169,114	20.1	6,940	0.8	60,368	7.2	842,996	(169,537)
'14	755,277	70.5	232,782	21.7	7,268	0.7	75,358	7.0	1,070,685	(227,689)
'15	863,356	68.3	284,273	22.5	7,655	0.6	108,716	8.6	1,264,000	(193,315)
'16	996,205	67.8	341,898	23.3	8,149	0.6	124,046	8.4	1,470,297	(206,297)
'17	1,108,903	65.8	413,970	24.6	8,653	0.5	152,822	9.1	1,684,348	(214,051)
'18	1,211,669	63.8	487,445	25.7	9,275	0.5	191,873	10.1	1,900,262	(215,914)
'19	1,380,245	62.4	567,920	25.7	9,937	0.4	254,000	11.5	2,212,102	(311,840)
'20	1,539,363	60.2	661,151	25.9	10,744	0.4	344,167	13.5	2,555,425	(343,323)
'21	1,715,284	58.0	763,979	25.8	11,601	0.4	465,009	15.7	2,955,873	(400,448)
'22	1,918,745	57.3	834,114	24.9	12,360	0.4	576,238	17.1	3,358,935	(403,062)

Note: () indicates year-over-year increase in reserves (new premiums + investment income)

Sourc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ss Release, Pension Finance Division, Retirement Pension Accumulation and Operation Status at the End of December 2017;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ccumulated Retirement Pension Funds (~June 2016)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ss Release (2019.4), Retirement Pension Accumulation and Operation Status in 2018 ('17 onward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ss Release (2020. 4.6), Statistics on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s in 2019;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ress Release (April 5, 2022), Statistics on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s in 202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ss Release (April 17, 2023), Statistics on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s in 2022

전체 금액을 기준년도(2022년) 퇴직연금 가입자 694.8만 명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적립액은 4,315만 원, 연간 납입액 730만 원으로 추정된다.7)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해지

7) 2022년 퇴직연금 가입자 694.8만 명, 적립금은 335조 원, 사용자 납입금은 57.2조 원임

자는 약 103.7만 명(49,811명+986,847명), 총금액은 15조6,034억 원(1조7,429억 원 +13조8,605억 원)⁸⁾이고 이를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5만 원이다. IRP 추가납부로 인한 해당연도 추가 납입액은 7.1조 원으로 이를 가입자 수인 300.4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납입액은 236만 원으로 추정된다.⁹⁾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건 수는 퇴직급여 대상자(45만 7천 건)의 7.1%인 3만 2천 건이며, 연금 수급 건당 적립 금액은 1.55억 원이다.¹⁰⁾

<Table 3> The status of I contributions for the enrolled workers (in 2022)

(Unit: Persons, 100 Million KRW)

		Number of people	Amount of the fund	Fund per person
Retirement benefits receivers	Annuity	32,566	50,639	1.55
	Lump sum	424,902	104,474	0.25
	Total	457,468	155,113	0.34
Retirement pension renrolled	Retirement pension	6,948,108	3,358,935	0.483
Leakage of the pension fund	Withdraw ¹⁾	49,811	17,429	0.35
	IRP termination	986,847	138,605	0.14
	Total	1,036,658	156,034	0.15
IRP	Out of pocket ²⁾	3,004,192	71,000	0.0236

Notes: 1) Calculated by dividing the sum of KRW 1.742 trillion in withdrawals and KRW 13.8605 trillion in cancellations (KRW 15.6034 trillion) by the number of withdrawals and cancellations (1.03 million)

2) The annual contribution amount for additional contributors to the Individual Retirement Plan (IRP) is KRW 7.1 trillion, divided by the number of IRP members (300.4 million) (using data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Statistics Korea)

Source: Compiled from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Dec. 19, 2023), Retirement Pension Statistics Results for 202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July 2023), Statistics on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s for 2022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3. 4. 17),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이를 활용하여 1인당 적립액 및 납입액을 환산함

8) 2022년 중도인출 인원 49,811명, 중도인출 금액은 1조 7,429억 원이며 해지 인원 986,847명이며, 해지 금액은 13조 8,605억 원임

9) 2022년 DC형 계좌 가입자 납입금 0.1조 원, IRP 가입자 납입금 7조 원(고용노동부 통계)이며, 해당년도 추가 납입자 수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으므로 가입자 수(통계청 통계)로 납입액을 나눔

10) 퇴직연금 수급자 규모가 제공되지 않아 계좌 수로 대체하여 설명함

2. 퇴직급여 제도의 문제점

퇴직연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이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입자들이 은퇴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Annuity)으로 수령하는 가입자의 비율이 전체 은퇴자의 7.1%에 불과하고 나머지 가입자들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기 때문이다.¹¹⁾

많은 퇴직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직시점에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긴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2023)에 따르면 연금으로 수령한 가입자의 적립금은 평균 1억 5,550만 원인데 비해 일시금으로 수령한 가입자의 평균 적립금은 2,459만 원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퇴직 시까지 보존되어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통계청(2023)에 따르면 다양한 이유로 2022년 한 해 동안 근로자들이 중도에 인출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1.7조 원에 이른다. 이를 인출사유별로 나누어 보면 주택구입으로 23,225명(46.6%)이 9,698억 원(55.6%)을 인출하여 가장 많았고, 주거임차가 15,742명(31.6%)이 5,095억 원(29.2%)을 인출해 그 뒤를 이었다. 여타 회생절차는 2,416명(14.6%), 장기요양은 1,880명(4.9%)순이었다. 따라서, 주거관련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더 오래, 더 많이 적립하여 노후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장에서 퇴직 시 은퇴 연령(55세)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IRP로 이전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IRP 해지를 통해 인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직 및 퇴직 시 해지 역시 퇴직연금 적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2023)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이·퇴직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한 인원은 98.4만 명이며 금액은 20조 1천억 원으로 1인당 이전 금액은 평균 2,044만 원 수준이었다. 이중 IRP를 해지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인원은 98만 6천 명이며 금액은 13조 8천억 원으로 전체 IRP이전 금액의 68.9%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연금 적립금 누수 문제를 해결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은퇴 시까지 보존되어 연금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11) 연금수령자 비율은 2020년 3.3%, 2021년 4.3% 2022년 7.1%로 상승중이다.

〈Table 4〉 Individual retirement plan(IRP) transfers and terminations

(Unit: Persons, 100 Million KRW, %)

Year	IRP transfer			IRP termination				
	Number of transferred account	Amount of transferred fund		Number of terminated account		Amount of terminated fund		
'15	784,530	106,649	<1,359>	717,155	(91.4%)	94,699	(88.8%)	<1,320>
'16	788,389	106,801	<1,355>	739,807	(93.8%)	105,762	(99.0%)	<1,430>
'17	779,187	114,529	<1,470>	749,625	(96.2%)	100,726	(87.9%)	<1,344>
'18	836,944	124,825	<1,491>	845,943	(101.1%)	108,470	(86.9%)	<1,282>
'19	844,123	138,982	<1,646>	864,801	(102.5%)	112,463	(80.9%)	<1,300>
'20	858,203	151,670	<1,767>	842,821	(98.2%)	110,521	(72.9%)	<1,311>
'21	913,201	176,274	<1,930>	865,116	(94.73%)	116,888	(66.31%)	<1,351>
'22	984,362	201,266	<2044>	986,847	(100%)	138,605	(68.86%)	<1,404>

Notes: 1) < > is the transfer and termination amount per person.

2) () indicates the percentage of terminations based on the number of terminated people (fund) compared to the number of transferred people (in fund).

Source: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2018), Retirement Pension Statistics for the Second Half of 2017 and Annualized, p 21;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2019.12.27), Retirement Pension Statistics as of 2018, p 21;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2021), 2020 Retirement Pension Statistics Results, p 21; Statistics Korea Press Release (2022), 2021 Retirement Pension Statistics Results, p 21; Kang Sung Ho (2020),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IRP Transfer of Retirement Benefits, KIRI Report,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적립금을 쌓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분은 대부분 근퇴법에서 정한 최소 수준인 연소득의 8.3% 수준이지만 가입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 추가 납입 시 연간 최대 900만 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가입자가 IRP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7.1조 원을 적립하였다. 2023년부터는 기존 700만 원이던 IRP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900만 원으로 증가하여 IRP 납입자와 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2023)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지난 5년(10년)간 수익률은 1.51%(1.93%)로 국민연금의 통산 연평균수익률 약 5.1%에¹²⁾ 비해 낮은 수준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안전자산 위주의 운용으로 자본시장을 이용한 수익률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현재 2% 수준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提高)한다면 노후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5〉 Returns by schemes and investment methodology by years (Unit: %)

Area	Category	DB	DC/Business IRP	Individual IRP	Total
Total	'15	2.11	2.38	1.76	2.15
	'16	1.68	1.45	1.09	1.58
	'17	1.59	2.54	2.21	1.88
	'18	1.46	0.44	△0.39	1.01
	'19	1.86	2.83	2.99	2.25
	'20	1.91	3.47	3.84	2.58
	'21	1.52	2.49	3.00	2.00
	'22	1.51	△1.21	△3.14	0.02
Principal-guaranteed	'15	2.10	2.39	1.86	2.14
	'16	1.69	1.90	1.46	1.72
	'17	1.48	1.63	1.19	1.49
	'18	1.54	1.72	1.28	1.56
	'19	1.74	1.94	1.52	1.77
	'20	1.74	1.69	1.27	1.68
	'21	1.45	1.28	0.97	1.35
	'22	1.79	1.94	1.78	1.83
Performance-based	'15	2.65	2.34	1.22	2.18
	'16	1.43	△0.52	△0.56	△0.13
	'17	5.54	7.11	6.64	6.58
	'18	△0.25	△5.52	△5.38	△3.82
	'19	3.88	7.63	7.51	6.38
	'20	4.89	13.24	11.95	10.67
	'21	2.85	7.34	7.32	6.42
	'22	△5.08	△16.92	△16.27	△14.20

Notes: 1) Weighted average return on reserves after total expenses, principal guarantee includes standby funds
 2) △ means '-'

Source: Complie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ss Release,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 and Operation Status in 2016;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ss Release (April 2019),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 and Operation Status in 201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ss Release (April 6, 2020), Statistics on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 and Operation Status in 2019;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ress Release (April 5, 2021), Statistics on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 and Operation Status in 202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ss Release (April 17, 2022), Statistics on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 and Operation Status in 2021

12)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2023년 기준)

다음 장에서는 현재 퇴직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노후소득대체율을 추산하고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개선되면 노후소득대체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다.

III.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1. 분석가정 및 방법

1) 분석가정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 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소득의 일정부분을 기여한 적립금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사적연금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소득계층에서 적립금에 비례하여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이 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대표 개인(예, 평균 연령 및 소득자)을 가정하여 소득대체율을 추정한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연금금액이 결정되어 퇴직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 역시 예측이 수월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납입액 및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라 적립금 및 연금액이 달라지는 DC형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을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기 위해 OECD(2023),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3),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사용한 제도변수 및 경제변수를 주요 가정변수 설정에 참고하였다. 근로자 평균소득은 OECD(2023)에서 제시한 2022년 기준 평균소득(Average Wage, 이하 AW)을 환율을 고려하여 월 415만 원을 가정하였다.¹³⁾

가입기간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가정하고 있는 40년을 기본으로 하되 현실을 고려하여 25년¹⁴⁾ 가입을 가정하였고, 기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통계 Data Base상 근로자 평균연령이 43.4세와 이후 퇴직까지 추가적으로 10년¹⁵⁾을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하

13) 이는 소득 상한이 존재하는 국민연금의 A값 286만원(22.12월~'23.11월 적용) 보다 45.1% 높은 수준이나, 국제기준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동 근로소득(415만 원)을 기준소득으로 하였다.

14) 국민연금을 충분히 가입한다고 가정한 성숙기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27년 내외인데, 이를 고려하여 25년으로 설정함

15)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금근로자는 주사업장으로

여 소득대체율을 산출하였다.

연금 수급기간은 은퇴연령(60세)과 평균수명(85세)을 고려하여 기본 25년(종신연금)으로 하되, 현실에서는 종신연금보다 확정기간형 연금 형태가 많다는 점에서 민감도 분석은 10년, 15년, 20년의 수급기간을 고려하여 소득대체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퇴직연금을 더 적립하고, 늘어난 근로기간만큼 연금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 소득대체율을 산출하였다.

퇴직연금 납입액(보험료율)은 현행 퇴직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연 소득의 8.3%를 기본으로 하되, IRP 등을 통해 추가납입이 가능하므로 민감도 분석에서 1%p~3%p 증액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연 소득의 9.3%~11.3%¹⁶⁾를 적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소득대체율을 산출하였다. 즉 향후 퇴직연금 보험료율(9.3%~11.3%)은 사업주 8.3%, 본인 1%~3%로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자산운용수익률 등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가정과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3) 자료를 참고하되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단순화하였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가정에 의하면 임금상승률은 3.5%, 물가상승률은 2.0%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되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임금상승률은 3.0%, 물가상승률은 2.0%로 가정하였다. 한편 재정추계에서는 자산운용 수익률을 4.5%로 가정하였으나 퇴직연금의 지난 10년 연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은 1.9%¹⁷⁾에 그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자산운용 수익률은 3.0%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에서 2.0%~6.0%를 적용하였다. 또한 분석의 편의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 및 연금수급 기간 동안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부터 51.8세에 퇴직을 권고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대한민국정부(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향후 추가 가입기간을 10년 정도로 설정함

16) 2021년 IRP 가입률(IRP가입자수/과세대상근로자수)은 6.0%이며, 이들 가입자의 보험료율(납부액/총급여액)은 7.7%로 나타남(국세청, 2022국세통계연보). 따라서 현재 IRP 가입자의 퇴직연금 보험료율은 8.3%(사용자부담분)+7.7%(본인기여분)=16%수준으로 추정됨

17)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2023)

〈Table 6〉 Variables and Assumptions

Category		Assumption	Explanation
System Variables	Earned income	-4.15M KRW	- 38,542 USD per year based on median worker wage in 2022 (OECD, 2023) - 49.78 million KRW per year (\$4.15 million per month) at the base exchange rate of 1,291 KRW
	enrollment period	-New member: 40yr(25yr) -Existing member: 10yr	- The statutory (realistic) income replacement rate for National Pension is based on the 40-year membership period, but 25 years is added to account for realism. - Assume a 10-year remaining enrollment period for workers with an average age of 43.4 year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tatistics DB).
	Pension Priod	-25yr(10yr~20yr)	- Assume 25 years to account for life expectancy after retirement (age 60) - Assuming a 10-20 year defined term annuity in sensitivity analysis
	Contribution rate	-8.3%(9.3%~11.3%)	- Based on the current statutory retirement benefit of 8.3% of an - Assuming you add 1% to 3% out-of-pocket contribution
Economic Variables	Wate growth	3.0%	- Use Ministry of Labor, Employment and Welfare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23), Fifth National Pension Financial Estimation Assumptions
	Inflation	2.0%	
	Investment return	3.0% (2.0%~6.0%)	

2) 분석방법

(1) 퇴직연금 수급자

소득대체율은 연금형태로 수급하게 될 때 산출될 수 있는 개념으로 일시금 수령은 기본적으로 소득대체율 산출이 불가능하다. 퇴직연금 수급자의 적립금은 퇴직급여액, 누수액, 추가납부액, 그리고 수익금이 포함되어 최종 결정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결정되면 수급 기간으로 나누어 연간 혹은 월간 연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근로시점의 소득으로 나누면 소득대체율이 산출된다. 소득대체율 산출 시 적립금, 연금액, 연간 근로소득은 모두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사용한다. 기본적 소득대체율 산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text{수급자 소득대체율} = \frac{\text{적립금/수급기간(25년)}}{\text{연간근로소득(415만원*12개월)}} \quad \text{식 (1)}$$

앞서 언급한 일시금의 경우 연금 형태의 수령이 아니므로 개념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출할 수 없으나, 일시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가정하여 연금 수급자와 일시금 수령자 간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할 수 있다. 이때 일시금 수령 시 이를 적립금으로 두면 앞의 식 (1)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2) 퇴직연금 기존 가입자 (가입이력 존재)

본 절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미래 소득대체를 산출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수급자가 아니므로 가입이력(납부이력)을 퇴직시점까지 추정하여 장래 수령하게 될 적립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액, 소득대체율을 산출한다.

현재 연금 수급자와 달리 퇴직연금 가입자는 어떤 경로를 따르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향후 본인 추가적 납부 없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퇴직급여만으로 퇴직연금을 구성하는 경우(가입자 1), 둘째, 기존 사용자가 제공하는 퇴직급여와 자신이 IRP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 퇴직연금을 강화하는 경우(가입자 2), 셋째, 기존 퇴직급여 없이 자신이 IRP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여 퇴직연금을 구성하는 경우(가입자 3)이다. 가입자 3은 자영업자에 해당되며, 2017년 7월 이후 모든 소득활동자에게 IRP가입을 허용하여 이를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의 총 예상 적립액(F)에는 기 적립액(F_1)과 향후 퇴직급여에 의한 적립액(F_2)과 본인이 추가 기여한 적립액(F_3)으로 구성될 수 있다. 기 적립액(F_1)은 앞의 수급자 적립액과 마찬가지로 기 납부한 퇴직급여액, 누수액, 기 추가납부액, 기 수익금으로 구성된다. 향후 퇴직급여에 의한 적립액(F_2)은 퇴직시점까지 향후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에 의한 적립금이고 여기에는 미래 퇴직급여 원금과 해당 수익금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본인 추가 기여에 의한 적립액(F_3)은 퇴직시점까지 향후 본인의 추가 기여에 의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립금이고 여기에는 미래 본인기여액과 운용 수익금이 포함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의 총 예상 적립액: $F = F_1 + F_2 + F_3$ 식 (2)

(단, F :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의 총 예상 적립액, F_1 : 기 적립액, F_2 : 향후 퇴직급여에 의한 적립액, F_3 : 본인의 추가 기여에 의한 적립액)

연 환산 총적립액은 3가지 시점별 적립액의 합산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식 (2)에서 각 시점별 적립액 F_1 , F_2 , F_3 에 대해 전체 납부년 수로 나누게 되면, 연환산 기 적립금 f_1 , 연환산 향후 퇴직급여 적립금 f_2 , 연환산 본인 추가 납부적립금 f_3 를 산출할 수 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연 환산 총적립액인 f 를 산출할 수 있다.

연환산 시점별 적립액: $f_1 = \frac{F_1}{T}$, $f_2 = \frac{F_2}{T}$, $f_3 = \frac{F_3}{T}$ 식 (3)

T : 총 납부연수, f_1 : 연환산 기 적립금, f_2 : 연환산 향후퇴직급여 적립금, f_3 : 연환산 본인 추가 납부적립금

연환산 총 적립액: $f = f_1 + f_2 + f_3$ 식 (4)

여기서 소득대체를 산출은 연간 급여액에서 연간 근로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다. 이때 연간 소득(Y)은 OECD 국제 비교 시 활용한 평균소득(AW, 2023년 기준)인 월 415만 원×12개월로 하였으며, 연간 급여액은 수지상등을 고려하면 연 환산 총 적립액과 동일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해당 시점으로 구분한 소득대체율은 식 (5)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 $Y = \text{월소득}(415\text{만 원}) \times 12\text{개월}$

소득대체율: $irr_{f_1} = \frac{f_1}{Y}$, $irr_{f_2} = \frac{f_2}{Y}$, $irr_{f_3} = \frac{f_3}{Y}$ 식 (5)

(단, irr_{f_1} : 기 적립금의 소득대체율, irr_{f_2} : 향후 퇴직급여 적립금의 소득대체율, irr_{f_3} : 추가 납부 적립금의 소득대체율)

이때 소득대체율은 다음 식 (6)~식 (8)에서와 같이 본인 기여액이 없는 직장 가입자(가

입자 1, 식 (6)), 본인 기여액이 있는 직장 가입자(가입자 2, 식 (7)), 자영업 가입자(가입자 3, 식 (8))로 구분해 볼 수 있다.

$$\text{소득대체율(가입자 1)} : irr_{f_{120}} = irr_{f_1} + irr_{f_2} = \frac{f_1 + f_2}{Y} \quad \text{식 (6)}$$

$$\text{소득대체율(가입자 2)} : irr_{f_{123}} = irr_{f_1} + irr_{f_2} + irr_{f_{3b}} = \frac{f_1 + f_2 + f_{3b}}{Y} \quad \text{식 (7)}$$

(단, $irr_{f_{3b}}$: 향후에 납부할 본인기여액을 의미함)

$$\text{소득대체율(가입자 3)} : irr_{f_{003}} = irr_{f_3} = \frac{f_3}{Y} \quad \text{식 (8)}$$

2. 분석결과

1) 현 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소득대체율

2022년 퇴직연금 실태를 반영하여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수급자의 경우 적립금 1억5,500만 원을 25년간 연금으로 수령 하면 한 달 평균 약 51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현행 퇴직연금 수급자의 생애 월평균소득(현재가치)이 현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415만 원)과 같다고 할 경우 현 퇴직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12.5%로 추정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수급자의 연금소득수준(소득대체율)은 평균 근로소득(월 415만 원)의 12.5%로 양호한 편이나 해당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대상자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7.1% 수준으로 매우 적다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급여 일시금 수급자의 적립액을 소득대체율을 환산하면 2.0%로 낮게 추정된다. 연금 수급자와 일시금 수급자를 합산한 집단인 현 퇴직급여 대상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두 집단 소득대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퇴직자의 평균 실질 소득대체율은 2.7%로 추정된다. 아래 표에서 이들 집단의 평균 적립액은 3,400만 원은 연금(1억 5,500만 원)과 일시금(2,500만 원) 적립액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된 값이며, 이를 25년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으로 가정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현 퇴직급여 대상자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지

단계에서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 등 적립금 누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한 해 동안 퇴직연금 중도 인출 및 해지자 비율은 전체 가입자의 15% 수준이다. 또한 중도 인출 및 이직 시 해지되는 금액(15.6조 원)을 퇴직 적립금을 전체 가입자로 나누어 구한 1인 평균 연간 누수금액은 1,505만 원이다. 이를 평균소득자(월 415만 원)의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 중간정산이나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한번 발생할 때마다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약 1.2%p씩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7〉 Income replacement and leakage rates by pension benefit type

	Category	Average amount (M KRW)	pension period (Month)	Monthly benefit (M KRW)	Replacement rate ¹⁾
Retirement benefits	Annuity	1.55	300	51.67	12.5%
	Lump sum	0.25	300	8.33	2.0%
	Total	0.34	300	11.33	2.7%
Funds leakage	Withdraw	0.35	300	11.66	△2.8%
	IRP termination	0.14	300	4.68	△1.1%
	Total	0.15	300	5.02	△1.2% (*△5.2% ~ △6.5%)

Notes: 1) Calculated as the income replacement rate based on the original contributions = {contributions/period of service (25 years)}/12 months/average monthly earnings (KRW 4.15 million)

2) * Leakage income replacement rate due to withdrawals and terminations, assuming an average of 4-5 job changes over a lifetime

2) 현 퇴직연금 가입자(미래 수급대상자)의 소득대체율

앞서 제시한 분석은 현 퇴직연금 수급대상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며, 여기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가입기간 동안 중간정산 및 이직 시 해지로 인한 퇴직연금 적립금 누수가 고려된 분석 결과이다.

여기서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아닌 정확히 말하면 현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이들이 향후 충분히 적립하여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받게 될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한다. 따라서 동 분석 결과는 현행 제도하에서 향후 중간정산 혹은 이직 시 해지 등 적립금 누수가 없을 경우 퇴직 시 달성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추정한 것이다.

앞서 <표 6>에 따라 현 퇴직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인 43.4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이 퇴직 시점까지 10년간 누수 없이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다음 <표 8>의 기적립액은 현 퇴직연금 가입자가 43.4세까지 적립한 금액의 평균을 의미하며, 사용자 부담의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의 IRP 추가납입액으로 구성된다. 장래 적립액은 43.4세 이후 퇴직 시까지 10년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장래 적립액을 의미한다. 연금액은 적립금액을 종신연금(25년 수급)을 가정하여 월 연금액으로 환산한 연금월액을 의미하며, 소득대체율은 산출된 연금월액을 월평균소득 415만 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다.

<Table 8> Expected income replacement rate¹⁾

Category	Pension Fund(M Won)			Annuity(M Won)			Income Replacement rate		
	Fund (Current) ²⁾	Fund (Future) ³⁾	Total	Fund (Current) ²⁾	Fund (Future) ³⁾	Total	Fund (Current) ²⁾	Fund (Future) ³⁾	Total
Retirement Pension	4,821	4,133	8,954	16.1	13.8	29.8	3.9	3.3	7.2
IRP	1,138	2,719	3,857	3.8	9.1	12.9	0.9	2.2	3.1
Total	5,959	6,852	12,811	19.9	22.8	42.7	4.8	5.5	10.3

Notes: 1) Estimated based on basic assumptions using a current retirement plan member with an average age of 43.4 years old (monthly income of 415 million won) as a representative individual (same hereafter)

2) Accumulated contributions means the average of the amounts accumulated by current plan members up to age 43.4, comprised of employer-paid retirement benefits and out-of-pocket IRP contributions (same hereafter).

3) Prospective contributions represent future contributions assuming 10 years of contributions after age 43.4 until retirement. (hereinafter the same)

먼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득대체율 개선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가입자(대상근로자의 53.3%)의 기 적립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3.9%¹⁸⁾, 10년간 누수 없이 퇴직연금이 적립됨에 따른 추가 소득대체율은 3.3%여서 현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시점에서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7.2%로 추정되었다. 한편, IRP 추가 납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18) 현 퇴직연금 가입 중인 자(평균연령 43.4세)가 기 적립금에 따른 소득대체율이 3.9%로 낮은 이유는 근로기간 동안 중도인출 및 해지로 인해 적립금이 일부 누수되었음을 반영함

10.8%이며, 이들의 현재 적립금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 0.9%와 향후 추가 적립액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2.2%를 고려한 IRP 추가적립으로 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3.1%로 추정된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IRP 추가적립을 동시에 실행중인 가입자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10.3%로 추정되었다.

3) 민감도 분석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변화와 관련되는 주요 변수로는 보험료율, 자산운용수익률, 납부기간, 수급기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보험료율, 자산운용수익률, 납부기간 변화는 적립단계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변화를 통해 급여수준을 변화시키는 변수이고, 수급기간 변수는 확보된 적립금 회수 기간에 따라 연금액과 소득대체율을 변화시키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절에서는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상황을 고려하되, 이들에게 향후 보험료율, 자산운용수익률, 납부기간, 수급기간 그리고 근로기간 변화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얻게 될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을 위해 초기 값과 변화 값은 앞의 기본 가정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대표가입자의 초기 값은 현 퇴직연금 가입자의 평균적 이력이다. 따라서, 대표가입자는 연령 43.4세, 월 소득 415만 원이며 현재까지 퇴직급여로 4,821만 원, IRP 추가가입으로 1,138만 원의 적립금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된다. 여기에 경제변수로 임금상승률 3%, 물가상승률 2%, 할인율 3%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기초 값을 바탕으로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가 향후 보험료율, 자산운용수익률, 납부기간, 수급기간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에 따른 연금액(월액), 소득대체율을 산출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납부기간은 현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43.4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잔여 납부가능기간으로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10년을 잔여 가입기간으로 하고 가입기간을 15, 20, 25년으로 증가시킬 경우를 가정하였다.

〈Table 9〉 Assumptions for comparative statics

Variables	Contribution rate	Investment return	Future Contribution period	Annuity period
Initial value	8.30%	3.00%	10yr	25yr
Changes	9.3%~11.3% (Increasing by 1%p)	2.0%~6.0% (Increasing by 1%p)	15yr, 20yr, 25yr	10yr, 15yr, 20yr

Note: Assuming that monthly income of the participant is 4.15M KRW, Current Retirement pension fund 48.21M KRW, IRP contribution 11.38M KRW, 3% wage growth, 2% inflation, 3% discount rate

(1) 납입료율 변화

법정 퇴직급여의 납입료율 변화는 퇴직급여에만 영향을 주고 IRP 추가납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행 퇴직급여 보험료율을 8.3%에서 1%p씩 증가할 때마다 현 가입자(혹은 수급자) 소득대체율은 0.4%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IRP 추가납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3.1%의 소득대체율과 합산하면 현행 8.3% 납입료율 수준에서 10.3%인 소득대체율이 납입요율 11.3%에서는 11.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10〉 Expected income replacement rate by changing contribution rate
(Unit: 10K KRW, %)

Contrib' Rate	Category	Pension Fund(M Won)			Annuity(M Won)			Income Replacement rate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8.3%	Retirement Pension	4,821	4,133	8,954	16.1	13.8	29.8	3.9	3.3	7.2
	IRP	1,138	2,710	3,848	3.8	9.0	12.8	0.9	2.2	3.1
	Total	5,959	6,843	12,802	19.9	22.8	42.7	4.8	5.5	10.3
9.3%	Retirement Pension	4,821	4,631	9,452	16.1	15.4	31.5	3.9	3.7	7.6
	IRP	1,138	2,710	3,848	3.8	9.0	12.8	0.9	2.2	3.1
	Total	5,959	7,341	13,300	19.9	24.5	44.3	4.8	5.9	10.7
10.3%	Retirement Pension	4,821	5,129	9,950	16.1	17.1	33.2	3.9	4.1	8.0
	IRP	1,138	2,710	3,848	3.8	9.0	12.8	0.9	2.2	3.1
	Total	5,959	7,839	13,798	19.9	26.1	46.0	4.8	6.3	11.1

11.3%	Retirement Pension	4,821	5,627	10,448	16.1	18.8	34.8	3.9	4.5	8.4
	IRP	1,138	2,710	3,848	3.8	9.0	12.8	0.9	2.2	3.1
	Total	5,959	8,337	14,296	19.9	27.8	47.7	4.8	6.7	11.5

Note: Contribution rate 8.3%, Future contribution period 10 years, Annuity period 25 years
 'Current' means fund that are already contributed, 'Future' means fund that will be contributed

(2) 자산운용수익률 변화

자산운용수익률은 퇴직연금과 IRP 추가 적립액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자산운용수익률이 3%에서 4%로 증가하면 현 가입자(혹은 수급자) 소득대체율은 퇴직급여에 의해 0.3%p(=7.5%-7.2%), IRP 추가납에 의해 0.2%p(=3.3%-3.1%) 증가하여 총 10.8%의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수익률이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수익률에 준하는 6% 수준까지 개선될 경우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총 소득대체율은 12.2%까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11〉 Expected income replacement rate by changing investment return

(Unit: 10K KRW, %)

Return	Category	Pension Fund(M Won)			Annuity(M Won)			Income Replacement rate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3%	Retirement Pension	4,821	4,133	8,954	16.1	13.8	29.8	3.9	3.3	7.2
	IRP	1,138	2,710	3,848	3.8	9.0	12.8	0.9	2.2	3.1
	Total	5,959	6,843	12,802	19.9	22.8	42.7	4.8	5.5	10.3
4%	Retirement Pension	4,821	4,559	9,380	16.1	15.2	31.3	3.9	3.7	7.5
	IRP	1,138	2,989	4,127	3.8	10.0	13.8	0.9	2.4	3.3
	Total	5,959	7,548	13,507	19.9	25.2	45.0	4.8	6.1	10.8
5%	Retirement Pension	4,821	5,038	9,859	16.1	16.8	32.9	3.9	4.0	7.9
	IRP	1,138	3,303	4,441	3.8	11.0	14.8	0.9	2.7	3.6
	Total	5,959	8,341	14,300	19.9	27.8	47.7	4.8	6.7	11.5
6%	Retirement Pension	4,821	5,576	10,397	16.1	18.6	34.7	3.9	4.5	8.4
	IRP	1,138	3,656	4,794	3.8	12.2	16.0	0.9	2.9	3.9
	Total	5,959	9,232	15,191	19.9	30.8	50.6	4.8	7.4	12.2

Note: Contribution rate 8.3%, Future contribution period 10 years, Annuity period 25 years

(3)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퇴직연금과 IRP 추가 적립액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즉 현 가입자가 은퇴시점을 늦춰 잔존 퇴직연금 납부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게 되면 가입자(혹은 수급자) 소득대체율은 퇴직급여에 의해 1.7%p(8.9%-7.2%), IRP 추가납에 의해 1.1%p(4.2%-3.1%) 증가하여 총 13.0%까지 증가한다. 납부기간이 5년씩 증가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1.7%p(7.2%→8.9%→10.5%→12.2%) 증가하고, IRP 추가납입의 소득대체율은 1.1%p(3.1%→4.2%→5.3%→6.4%)하여, 25년간 추가적으로 적립할 경우 전체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18.5%(10.3%→13.0%→15.8%→18.5%)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납부기간 1년 증가에 따라 퇴직급여는 0.34%p(1.7%p/5년), IRP 추가납입은 0.22%p (1.1%p/5년), 전체는 0.54%p(2.7%p/5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2> Expected income replacement rate by changing contribution period
(Unit: 10K KRW, %)

Future Contrib' period	Category	Pension Fund(M Won)			Annuity(M Won)			Income Replacement rate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10yr	Retirement Pension	4,821	4,133	8,954	16.1	13.8	29.8	3.9	3.3	7.2
	IRP	1,138	2,710	3,848	3.8	9.0	12.8	0.9	2.2	3.1
	Total	5,959	6,843	12,802	19.9	22.8	42.7	4.8	5.5	10.3
15yr	Retirement Pension	4,821	6,200	11,021	16.1	20.7	36.7	3.9	5.0	8.9
	IRP	1,138	4,065	5,203	3.8	13.6	17.3	0.9	3.3	4.2
	Total	5,959	10,265	16,224	19.9	34.2	54.1	4.8	8.2	13.0
20yr	Retirement Pension	4,821	8,267	13,088	16.1	27.6	43.6	3.9	6.6	10.5
	IRP	1,138	5,420	6,558	3.8	18.1	21.9	0.9	4.4	5.3
	Total	5,959	13,687	19,646	19.9	45.6	65.5	4.8	11.0	15.8
25yr	Retirement Pension	4,821	10,334	15,155	16.1	34.4	50.5	3.9	8.3	12.2
	IRP	1,138	6,775	7,913	3.8	22.6	26.4	0.9	5.4	6.4
	Total	5,959	17,109	23,068	19.9	57.0	76.9	4.8	13.7	18.5

Note: Contribution rate 8.3%, Investment return 3%, Annuity period 25 years

(4) 수급기간의 변화

연금수급자들은 종신연금이 아닌 기간 확정형 연금을 선택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급기간은 퇴직연금과 IRP 추가 적립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연간 연금액과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신연금(25년 가정)을 수령할 경우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민감도 분석에서는 수급기간 단축 시 효과를 살펴본다. 수급기간이 짧아질수록 연간 연금 급여액과 소득대체율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확정된 적립액에 대해 수급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수지상등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수급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줄이게 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가입자(혹은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퇴직급여에 의해 0.8%p(8.0%-7.2%), IRP 추가납에 의해 0.5%p(3.6%-3.1%) 증가하여 총 1.4%p(11.7%-10.3%) 증가한다. 수급기간이 5년씩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면 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체증적으로 증가하고(7.2%→8.0%→9.4%→12.2%), IRP 추가납입의 소득대체율도 체증적으로 증가(3.1%→3.6%→4.5%→6.4%)하여, 전체 기준 소득대체율은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0.3%→11.7%→13.9%→18.5%). 다만, 수급기간이 감소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에는 노후소득보장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적연금 수령이 끝난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Table 13〉 Expected income replacement rate by changing benefit period

(Unit: 10K KRW, %)

Benefit Period	Category	Pension Fund(M Won)			Annuity(M Won)			Income Replacement rate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25yr	Retirement Pension	4,821	4,133	8,954	16.1	13.8	29.8	3.9%	3.3	7.2
	IRP	1,138	2,710	3,848	3.8	9.0	12.8	0.9	2.2	3.1
	Total	5,959	6,843	12,802	19.9	22.8	42.7	4.8	5.5	10.3
20yr	Retirement Pension	4,821	4,133	8,954	16.1	17.2	33.3	3.9	4.2	8.0
	IRP	1,138	2,710	3,848	3.8	11.3	15.1	0.9	2.7	3.6
	Total	5,959	6,843	12,802	19.9	28.5	48.4	4.8	6.9	11.7
15yr	Retirement	4,821	4,133	8,954	16.1	23.0	39.0	3.9	5.5	9.4

	Pension									
	IRP	1,138	2,710	3,848	3.8	15.1	18.8	0.9	3.6	4.5
	Total	5,959	6,843	12,802	19.9	38.0	57.9	4.8	9.2	13.9
10yr	Retirement Pension	4,821	4,133	8,954	16.1	34.4	50.5	3.9	8.3	12.2
	IRP	1,138	2,710	3,848	3.8	22.6	26.4	0.9	5.4	6.4
	Total	5,959	6,843	12,802	19.9	57.0	76.9	4.8	13.7	18.5

Note: Contribution rate 8.3%, Investment return 3%, Future contribution period 10 years

(5) 근로기간 및 수급기간 변화

지금까지의 분석은 40대 중반의 대표 개인이 10년간 퇴직연금을 누수 없이 적립하고 60세부터 25년 간 적립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근로기간이나 수령기간 중 한가지 변수가 변화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근로기간을 증가시키고 해당 기간만큼 연금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 노후 소득대체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근로기간을 5년 증가 시켜 15년 간 퇴직연금을 누수 없이 적립하고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액은 월 62.7만 원이 되고 소득대체율은 15.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근로기간을 10년 증가(20년간 추가 납입)시키고 15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월 연금수령액은 96만 원이 되고 소득대체율은 23.1% 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4〉 Expected income replacement rate by changing contribution and benefit period

(Unit: 10K KRW, %)

Contrib/ Benefit period	Category	Pension Fund(M Won)			Annuity(M Won)			Income Replacement rate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Fund (Current)	Fund (Future)	Total
C:10yr B:25yr	Retirement Pension	4,821	4,133	8,954	16.1	13.8	29.8	3.9	3.3	7.2
	IRP	1,138	2,710	3,848	3.8	9.0	12.8	0.9	2.2	3.1
	Total	5,959	6,843	12,802	19.9	22.8	42.7	4.8	5.5	10.3
C:15yr B:20yr	Retirement Pension	4,821	6,200	11,021	16.1	25.8	41.9	3.9	6.2	10.1
	IRP	1,138	4,079	5,217	3.8	17.0	20.8	0.9	4.1	5.0
	Total	5,959	10,279	16,238	19.9	42.8	62.7	4.8	10.3	15.1

C:20yr B:15yr	Retirement Pension	4,821	8,267	13,088	16.1	45.9	62.0	3.9	11.1	14.9
	IRP	1,138	5,438	6,576	3.8	30.2	34.0	0.9	7.3	8.2
	Total	5,959	13,705	19,664	19.9	76.1	96.0	4.8	18.3	23.1
C:25yr B:10yr	Retirement Pension	4,821	10,334	15,155	16.1	86.1	102.2	3.9	20.8	24.6
	IRP	1,138	6,798	7,936	3.8	56.6	60.4	0.9	13.6	14.6
	Total	5,959	17,131	23,090	19.9	142.8	162.6	4.8	34.4	39.2

Note: Contribution rate 8.3%, Investment return 3%

IV. 결론

통계청(2022)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 수준은 낮아 65세 이상 노인 중 빈곤층의 비율은 39.7%¹⁹⁾에 달한다. 이는 근로기에 노후에 사용할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혁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원 추가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의 기능에 주목하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제도 개선 시 노후소득대체율 제고 정도를 추산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상황에서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노후소득 대체율은 2.7% 수준이다.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는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 등 누수요인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노후소득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개선하여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를 막아 퇴직급여가 온전히 노후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은퇴가 10여 년 남은 평균소득을 올리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7.2%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IRP 추가납입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추가로 적립하거나, 자산운용수익률을 5% 수준으로 높일 경우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11.5%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만약 근로기간을 현재보다 10년 정도 늘리고

19) 통계청(2023),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연금수급기간을 10년 정도 줄일 경우 퇴직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23%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5년~30년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약 25%~3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올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부터 얻는 총 소득대체율은 36.5%~41.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근로기간을 늘려 추가적인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경우 OECD 평균인 62%에 근접한 수준까지 소득대체를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 등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기간을 증가시켜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적 근로기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동 연구가 퇴직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계 역시 명확하다. 먼저 동 연구의 현황분석은 분석 자료의 부족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자의 총량을 통해 평균 수준에서 대체율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 놓인 가입자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본 논문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동일한 비율로 퇴직연금 및 IRP추가 납입율을 증가시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소득수준과 저축여력에 따라 추가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는 수준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추정 역시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관측치가 아닌 평균소득자의 수치를 이용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적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한계는 향후 추가적인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로 누수되는 퇴직연금 자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저소득층이 어떻게 더 많은 노후소득원을 준비하게 유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향후 연구를 통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 연구는 현시점에서 노후소득원으로써 퇴직연금의 역할을 평가하고 노후소득 보장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호 (2020), “퇴직금의 IRP이관 의미와 한계”,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_____ (2023),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시사점. **KiRi 포커스**, 보험연구원.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보험연구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현황.
- 국민연금연구원 (2023),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 문성훈·김수성 (2014),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pp. 9-34.
- 정원석 (2018), “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적용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재정학회, pp. 117-141.
- 정원석·강성호 (2015),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pp. 113-142.
- _____ (2017a),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추가가입 유인 추정”, **재정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pp. 215-240.
- _____ (2017b), “사적연금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시 빈곤완화와 재정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재정학회, pp. 105-142.
- 정인영 (202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현황과 쟁점”, 제10차 국민연금 전문가포럼 발표자료, 국민연금 연구원.
-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 각 연도.
- _____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 _____ (2022), **2022 통계청 고령자 통계**.
- Edward Palmer (2003). “The Swedish Pension Reform Model: Framework and Issues”, OECD
- OECD (2017). “Long-term projections of public pension expenditure”, in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_____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205.

Abstract

The expected retirement pension replacement rate is as low as 2.7%. We suspect that early withdrawal and termination of retirement pension impede retirement pension benefits from being the source of retirement income. This paper estimates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retirement pensions after stopping pension contribution leakage and improving the investment return of retirement pension funds. The results show that when there are no early withdrawals and terminations, existing members can have an income replacement rate of 7.2% from their retirement pension. Also, if an employee saves more through IRPs or if the investment return of the pension fund increases to 5%, the replacement rate could reach 11.5%. If the employee works ten mor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rom the retirement pension becomes 23%, which means the total income replacement rate,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35%), could be about 58% - near the OECD average.

※ Key words: Income Replacement Rate, Pension, Retirement Pension